

문수로 라티에르 673 기관추천 특별공급 안내문

- 주택 청약 시 한국부동산원 '청약 Home' 홈페이지(www.applyhome.co.kr)로 청약 접수를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 해당 추천기관에서 특별공급 대상자로 선정되었다 하더라도 반드시 특별공급 신청일에 청약 신청을 하셔야 하며, 미신청 시 당첨자 선정 및 동호수 배정이 불가하오니 이점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 신청자격 확인결과 부적격자로 판명되는 경우, 해당 기관추천 · 청약신청 · 동호배정 여부와 무관하게 계약체결이 불가하며, 당첨자로 간주, 청약통장 효력상실 및 청약통장 재사용 불가, 특별공급 신청자격 박탈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신청자가 안내문 내용을 미숙지하고 신청하여 받는 불이익은 사업 주체에서 책임지지 않으므로, 해당 기관에서는 '특별공급 신청 자격'을 충분히 안내 및 검증한 뒤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대상자 추천은 주택형별로 배정된 세대수(예비 포함)까지 가능하며, 당첨자 선정방법은 해당 기관의 장이 정하는 우선순위에 따릅니다.
- 본 안내문의 내용은 입주자모집공고 승인 전, 기관추천 특별공급 안내를 위한 예정 사항으로 향후 지자체 협의 및 입주자모집공고 승인에 따라 변동될 수 있으니, 반드시 입주자모집공고 승인 이후 입주자모집공고문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공급개요 및 분양일정

- 위 치 : 울산광역시 남구 신정동 673번지 일원
- 규 모 : 공동주택 총 199세대 / 지하6층 ~ 지상35층 / 2개동 (오피스텔 35호실 및 근린생활시설 금번 공급에 미포함)
- 모집공고 : 2026.04.10. 예정
- 공급 개요

주택형	세대수	세대별 계약면적(m ²)				기타공용 (주차장 등)	계약면적
		주택공급면적			소계		
		주거전용	주거공용	소계			
84A	60	84.9421	30.1540	115.0961	70.3572	185.4532	
84B	15	84.8550	31.0628	115.9178	70.2850	186.2028	
84C	62	84.8958	29.9262	114.8220	70.3188	185.1408	
104	62	104.9032	37.3416	142.2448	86.8908	229.1357	
소계	199						

※ 상기 공급 개요는 입주자 모집공고 승인 시 지자체 승인 기준에 따라 변경 될 수 있습니다.

■ 기관추천 특별공급 배정세대

구 분	84A	84B	84C	104	계	
국가유공자	1	1	1	0	3	
장기복무제대군인	1	0	1	0	2	
10년 이상 장기복무군인	1	0	1	0	2	
중소기업근로자	1	0	1	0	2	
장애인	울산광역시	1	1	1	0	3
	부산광역시	1	0	1	0	2
	경상남도	1	0	1	0	2
계	7	2	7	0	16	

※ 본 안내문은 입주자모집공고 승인 전 작성된 내용으로 입주자모집공고 승인 시 면적 및 배정 세대수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6조의2에 따라 입주자 선정 후 잔여주택이 있는 경우, 특별공급 대상 주택수의 50% 이상 특별공급 예비입주자를 선정합니다.

■ 분양일정

구 분	일 정(예정)	참고사항
입주자모집공고일	2026.04.10.(금)	한국부동산원 '청약Home' 홈페이지(www.applyhome.co.kr)
특별공급 청약접수	2026.04.20.(월)	
당첨자 및 동·호수 발표	2026.04.29.(수)	
정당계약일	2026.05.11.(월)~2026.05.13.(수)	장소 : 분양홍보관(울산광역시 남구 신정동 1129-13)

※ 노약자 및 장애인 등 인터넷 청약이 불가능한 경우에 한해 현장 견본주택에서 특별공급 방문 접수가 가능합니다.

(방문접수 시간 : 10:00~14:00 / 공동인증서, 자격입증 서류 등 필히 지참, 은행창구 접수 불가)

※ 상기 일정은 지자체 승인 시 변동 가능하오니 향후 입주자모집공고문에서 정확한 일정을 확인하여주시기 바랍니다.

2. 특별공급 신청자격

■ 신청자격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6조에 의거 주택 특별공급 신청자격을 갖춘 무주택 세대 구성원으로서 해당 기관에서 특별공급 대상자로 선정하여 사업 주체에 통보한 자를 대상으로 함
- 청약통장 가입 요건(국가유공자, 장애인, 철거민 및 도시재생 부지제공자는 제외)
 - ① 청약예금 : 해당 주택에 신청 가능한 청약예금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하고, 청약예금 지역별, 면적별 예치금액 이상
 - ② 청약부금 : 청약부금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하고, 매월 약정 납입일에 납부한 월납입 인정금액이 85㎡ 이하 주택에 신청 가능한 청약예금 지역별 예치금액 이상
 - ③ 주택청약종합저축 :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된 자 중,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납입 인정 금액이 해당 주택에 신청 가능한 청약예금 지역별, 면적별 예치금액 이상

* 청약 통장 예치 기준 금액

구 분	특별시 및 부산광역시	그 밖의 광역시	특별시 및 광역시를 제외한 지역
전용면적 85㎡ 이하	300만원	250만원	200만원

※ 가입기간 및 예치금액 인정 등 신청자격 판단의 기준일은 최초 입주자모집공고 예정일(2026.04.10.)입니다.

※ '지역'은 입주자모집공고 예정일(2026.04.10.) 기준 주택공급신청자의 주민등록표에 따른 거주지역을 말합니다.

■ 1회 한정 / 자격요건 / 자격제한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5조에 따라 특별공급은 무주택세대구성원에게 한 차례에 한정하여 1세대 1주택 기준으로 공급합니다.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6조제1호 및 제8호의2에 해당하는 경우 특별공급 횟수 제한 예외)
- 입주자모집공고 예정일 기준 무주택요건, 청약통장 자격요건 및 해당 특별공급별 신청자격을 갖추어야 합니다.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5조의2에 따라 부부는 당첨자발표일이 같은 주택에 대해 중복청약할 수 있으며, 중복당첨 시 다음과 같이 처리합니다.

구 분	처리방법
당첨자발표일이 다른 주택	당첨자발표일이 빠른 당첨건은 유효하며, 당첨자발표일이 늦은 당첨건은 부적격 처리
당첨자발표일이 같은 주택	부부가 중복당첨된 경우 접수일시가 빠른 당첨건은 유효하며, 접수일시가 늦은 당첨건은 무효 처리 ※ 분 단위 접수일시가 동일한 경우, 연령(연월일 계산)이 많은 청약신청자의 당첨건이 유효
	부부 외 세대원이 중복당첨된 경우 모두 부적격 처리

■ 무주택 요건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다음 특별공급 유형별 무주택세대구성원 또는 무주택세대주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 무주택세대구성원이란? 다음 각 목의 사람(세대원) 전원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아니한 세대의 구성원

가. 주택공급신청자

나.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

다. 주택공급신청자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이면서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함께 등재되어 있는 사람

라. 주택공급신청자의 직계비속(직계비속의 배우자 포함. 이하 같음)이면서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함께 등재되어 있는 사람

마.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비속이면서 주택공급신청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함께 등재되어 있는 사람

※ 2024.03.25.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3조에 따라 주택공급신청자가 속한 세대가 소형·저가주택을 1호 또는 1세대만 소유하고 있는 경우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것으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동 규칙 제53조 참조)

3. 당첨자 선정 방법

- 기관추천 특별공급의 경우 자격요건을 갖춘 자는 먼저 해당기관에 신청해야 합니다.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36조에 의거하여 관계기관의 장이 정하는 우선순위에 따라 공급합니다.
- 기관추천 특별공급 대상자 및 예비대상자는 해당 기관에서 선정하여 사업주체에 통보한 자만 신청 가능하며, 해당 기관에서 공급대상자로 선정되었다고 하더라도 반드시 해당 신청일(특별공급 신청일)에 인터넷 청약 신청의 방법으로 신청해야 합니다.
※ 미신청 시 당첨자 선정(동·호배정)에서 제외되며 계약 불가
- 특별공급 입주자를 선정하고 남은 주택이 있는 경우 다른 특별공급 신청자 중 선정되지 않은 자를 포함하여 무작위추첨으로 입주자 및 예비입주자를 선정하므로, 입주자 및 예비입주자로 선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대상자 추천 시 경쟁률이 1:1을 초과하는 경우 당첨자 선정방법은 기관추천 우선 순위에 따라 선정됩니다.
- 당첨자 동·호수 배정은 한국부동산원의 입주자 선정 프로그램으로 시행합니다.

4. 유의사항

- 사업주체는 신청접수 시 신청자격을 확인(검증)하지 않고, 당첨자가 청약 신청 시 기재한 사항만으로 당첨자를 선정하므로, 당첨자에 한해 신청자격 확인 서류를 통해 신청자격을 검증하며 확인결과 신청자격과 다르게 당첨된 사실이 판명될 경우에는 불이익(당첨 및 계약취소, 통장효력 상실, 당첨자 명단관리 등)을 받게 됨을 유념하시고, 본인의 착오 신청으로 인한 불이익 발생 시 신청자 본인의 책임이오니 본인의 신청자격을 정확히 확인하여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 본건 공급 주택과 당첨자 발표일이 동일한 모든 주택(청약홈 및 LH청약플러스 등의 기관을 통해 청약접수 및 당첨자 선정을 진행하는 경우 포함)에 대하여 1인 1건만 신청이 가능하며, 2건 이상 중복신청 시 모두 무효처리 또는 당첨자 선정 이후에도 당첨 무효(예비입주자 지위 무효)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단, 본인이 동일주택에 특별공급과 일반공급 각 1건씩 중복청약이 가능하나 특별공급 당첨자로 선정될 경우 일반공급 당첨자 선정에서 제외됩니다. (본인이 동일주택에 특별공급간 또는 일반공급간 중복청약 시 모두 무효 처리)
- 청약시 신청자의 착오로 인한 잘못된 신청에 대해서는 수정 접수(타입 변경 등)가 불가하며, 이에 대한 책임은 청약 신청자에게 있으므로 유의하시기 바라며, 신청 접수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습니다.
- 고령자 및 장애인 등 인터넷청약 불가자의 견본주택 방문 신청시 특별공급별 구비서류 미비자는 접수 불가하며, 접수 마감시간 이후 추가로 접수하지 않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신청자, 배우자, 세대구성원 등의 관계 및 신청자격 적격여부 확인을 위해 추가로 별도의 서류제출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 기재사항이 사실과 다르거나 기재 내용을 검색 또는 확인결과 평점요소 자격이 다르거나 무주택기간이 상이할 경우, 유주택자로 판명 될 경우에는 계약체결 이후라도 당첨취소 및 계약해제는 물론 관련 법령에 의해 처벌 될 수 있습니다.
- 특별공급 대상자로 동·호수를 배정받고 공급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 당첨자로 보며(1회 특별공급 당첨 간주), 해당 구비서류 미비 시 계약체결 후라도 계약이 해제될 수 있습니다.
- 공급금액, 전매제한기간, 재당첨제한기간, 제출서류, 공급대상 주택관련 세부사항 및 유의사항 등은 입주자모집공고문을 확인하시어 공고문 미확인으로 인한 불이익이 발생치 않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본 안내문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 및 관계 법령과 상이한 사항은 입주자 모집공고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등 관계법령에 따릅니다.

5. 분양홍보관 위치 : 울산광역시 남구 신정동 1129-13